

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보육가족과-16509 |
| 결재일자 | 2015.6.18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방침번호 | |

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주무관 | 여성정책팀장 | 보육가족과장 | 주민생활국장 | | |
| 정재신 | 이용애 | 고영희 | 06/18 박기웅 | | |
| 협 조 | 기획예산과장 | 이운영 | | | |
| | 인사팀장 | 송재훈 | | | |
| | 후생노무팀장 | 방돈석 | | | |
| | 창의지원팀장 | 이경생 | | | |

- 일 .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-

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신청계획



성 동 구
(보육가족과)

-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-

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신청계획

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‘가족친화기관인증’ 제도에 우리구의 유효기간(2년)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함

I 개 요

가족친화기업(기관) 인증제도란?

- 가족친화제도(직원들의 탄력적 근무제도,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, 부양가족 지원제도, 근로자 지원제도 등)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(기관)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2010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획득 (3년)

2013년 가족친화인증 연장 인증 (2년)

○ 관련 근거

-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(가족친화기업 등 인증) 및 제17조(인증의 유효기간)

※ 인증의 유효기간

- 신규 인증(3년) ▶ 유효기간 연장 인증(2년) ▶ 재인증(3년)
 -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

II

주요내용

- 인증주체: 여성가족부장관
- 신청대상: 기업, 공공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대학 등
- 인증기준: 100점 만점에 70점(가점포함) 이상, 가족친화 실행제도 50% 이상 획득 시 인증 (붙임 1 참조)
- 기준 내용
 -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(20점)
 -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,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,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
 - 가족친화제도 실행제도(60점)
 -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
 - 가족친화경영 만족도(20점)
 -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

<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>

-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
 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 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, 자녀 학자금 지원, 직장어린이집 설치
- 유연근무제도
 - 시차출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, 스마트워크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
 - 정시퇴근(‘가족사랑의 날’시행),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, 근로자 상담제도, 장기근속휴가 지원, 가족돌봄휴직, 가족초청행사, 가족건강검진 지원, 가족휴양 시설 제공,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,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

Ⅲ

기대효과

-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 표현 및 구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
-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
- 우리구 가족친화경영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가능
- 정부종합평가 적용

Ⅳ

추진일정

| 추진내용 | 추진일정 | 내 용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증신청 | 2015.6.29 |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접수 (가족친화인증사무국) |
| 인증심사 | 2015. 6~9 | 서류심사, 현장심사 |
| 심사결과 통보 | 2015. 12월 | |

Ⅴ

행정사항

- 인증 신청: 보육가족과
- 서류 제출협조: 총무과, 기획예산과 등 관련부서
- 인증 심사수수료 - 100만원(VAT별도)

- 붙임 1. 재인증 기준 1부. (아래)
2. 심사항목별 증빙확인. (별첨)
 3. 평가기준별 평가기준. (별첨). 끝.

[붙임 1]

□ 재인증 기준

○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평가항목 및 배점

- 인증기준 : 100점 만점에 70점(가점포함) 이상, 가족친화실행제도 50% 이상 획득 시 인증

| 심사요소 | | 심사항목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최고경영층의 리더십 (20) | | 1.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| 15 |
| | | 1.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| 3 |
| | | 1.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| 2 |
| 2. 가족친화실행제도 (60) | 2.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(40) | 2.1.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| 10 |
| | | 2.1.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| 5 |
| | | 2.1.3 남·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| 10 |
| | | 2.1.4 출산전·후 휴가 후 복귀율 | 10 |
| | | 2.1.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| 5 |
| | 2.2 유연근무제도(10) | 2.2.1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, 스마트워크 등 | 10 |
| | | 2.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(10) | 2.3.1 정시퇴근 ('가족사랑의 날'시행) |
| | 2.3.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| | 5 |
| | 3. 가족친화경영 만족도(20) | | 3.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|
| 가.감점(최대 10) | | 직장어린이집 설치 (* 의무이행사업장 제외) | 5 |
| | |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(5가지, 각 1점) | 5 |
| | | 가족돌봄휴직 이용 | 2 |
| | | 고용노동부 주관 「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」선정 | 1 |
| | | 고용노동부 주관 「고용창출 우수기업」선정 | 0.5 |
| | | 고용노동부 주관 '적극적 고용개선조치'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| -1 |
| | |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| 1 |
| | |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| 0.5 |
| | | 대체인력 채용 | 1 |
| 총계 | | | 100 (가감점제외) |

